



In depth

IFRS17 affects more than just insurance companies

비보험회사들이 고려해야 할 기준서 제1117호의 주요 사항

In depth INT2022-14

1. 개요

기준서 제 1117 호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을 발행하는 특정 산업에 대해서가 아니라 모든 보험계약에 적용되므로 전통적인 보험회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즉, 보험계약을 발행한 비보험회사도 해당 보험계약에 대해 기준서 제 1117 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기준서 제 1117 호는 유의적인 보험위험이 이전되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계약을 정의한다. 기준서 제 1117 호에서 규정하는 보험계약의 정의는 기준서 제 1104 호 '보험계약'과 유사하지만 회계처리 결과는 기준서 제 1104 호와 매우 다르다.

기준서 제 1104 호 하에서 기업들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보험계약과 관련한 기존의 회계 실무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실무에 다양성이 있었으며, 많은 비보험회사들은 보험계약을 발행할 때 기준서 제 1037 호의 측정원칙을 적용했다. 기준서 제 1117 호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회계처리 실무의 다양성을 줄이고 보험계약의 회계처리에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기준서 제 1117 호는 보험계약의 유형에 따라 일반적인 측정 모형(general measurement model, 'GMM'), 보험료배분접근법(premium allocation approach, 'PAA') 및 변동수수료 접근법 (variable fee approach, 'VFA')의 3 가지 측정 접근법을 제시한다.

- 일반적인 측정 모형은 직접 참가특성이 없고, 계약이 적격하여 보험료배분접근법의 선택이 불가한 모든 보험계약에 적용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측정 모형은 보험계약의 집합(즉, 기준서 제 1117 호의 회계단위)이 확률가중 기대가치(이행현금흐름)와 위험조정 및 남아 있는 미실현이익(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측정될 것을 요구한다. 일반적인 측정 모형을 적용할 때 많은 복잡성(예: 확률가중 이행현금흐름과 할인율, 위험조정을 결정하고 재무적과 비재무적 가정 및 마진의 해제 양상의 변동을 반영하는 등)이 있는데 해당 내용들은 이번 in depth 에서 논의되지 않는다. 비보험회사가 발행한 기준서 제 1117 호 적용범위 내의 보험계약 중 보장기간이 1 년 이하인 계약들에 대해서는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다.
- 보험료배분접근법은 단기간(일반적으로 1 년 이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잔여 보장부채 측정을 간소화할 수 있는 선택적 접근법이다. 이 접근법은 수취한 보험료를 고려하여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하여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을 간소화한다. 발생사고부채는 일반적인 측정 모형과 같은 방식으로 측정된다. 비교적 단순한 보험계약에 보험료배분접근법이 적용되면 더 적은 원가와 복잡성으로 일반적인 측정 모형을 적용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보험회사가 발행한 보험계약 중 보장기간이 1 년 이하인 계약들에 대해서는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료배분접근법의 수익 가득 양상은 계약부채를 인식하고 기간이 경과하여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해당 부채를 상각하는 기준서 제 1115 호의 원칙과 넓은 범위에서 일관된다. 그러나, 보험손실에 대한 부채 인식은 기준서 제 1117 호의 측정 요구사항을 따라야 한다.

- 변동수수료 접근법은 직접 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 접근법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기초항목에 계약상 연계되어 있고 그 가치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참가적 계약에 적용된다

또한 기준서 제 1104 호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계약의 보험요소를 분리하고 기준서 제 1115 호, 제 1037 호 또는 제 1109 호와 같은 다른 기준서의 측정원칙을 적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준서 제 1117 호는 명백히 구분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와는 계속하여 구분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전체 계약에 대해 적용된다. 기준서 제 1117 호의 명백히 구분되는(distinct) 요소의 분리 기준이 기준서 제 1104 호의 '분리'(unbundle)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다른 요소들에 대한 적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기준서 제 1117 호는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계약 중 특정 보증 및 고정수수료 서비스 계약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비보험회사가 발행한 보험계약 중 적용범위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보증이나 특정 고정 수수료 서비스 계약과 이행보증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계약들에는 기준서 제 1117 호의 측정 요구사항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종속기업 등을 통해 자가보험을 거래하는 그룹사들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에는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연결실체 내의 회사가 작성하는 개별 또는 별도재무제표는 기준서 제 1117 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준서 제 1117 호는 2023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비교재무제표는 소급하여 재작성된다.

기준서 제 1117 호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고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필요할 수 있다.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계약(전환일의 기존 계약 포함)과 이 중 기준서 제 1117 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것(즉, 적용범위 제외가 아닌 것)을 식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적용에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필요할 수 있다.

특정 보험계약에 기준서 제 1117 호를 적용할 때 기업들은 다음 작업들을 수행해야 한다.

- 계약,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를 식별.
-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식별하고 각 포트폴리오를 보험계약 집합(기준서 제 1117 호의 회계단위)으로 세분.
- 어떤 측정 접근법을 적용할지 결정(1-2 페이지의 측정 접근법 참조).
- 해당 측정 접근법을 적용 - 수취 및 지급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 위험 조정 및 (대부분) 할인절차 등 포함.
- 매 보고기간에 업데이트된 정보(기대현금흐름, 위험 조정 및 필요한 경우 할인절차 포함)를 반영하도록 계산을 업데이트.
- 기준서 제 1117 호와 제 1008 호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을 공시.
- 이러한 계산을 정확하게 수행하고 필요한 공시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이나 절차 및 통제가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

기준서 제 1117 호는 보험계약을 계약당사자 일방(계약발행자)이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보험사건)으로 계약상대방(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으로 정의한다. 보상은 현금 지급일 수도 있고 현물 지급(예: 고장 난 제품 수리 또는 교체)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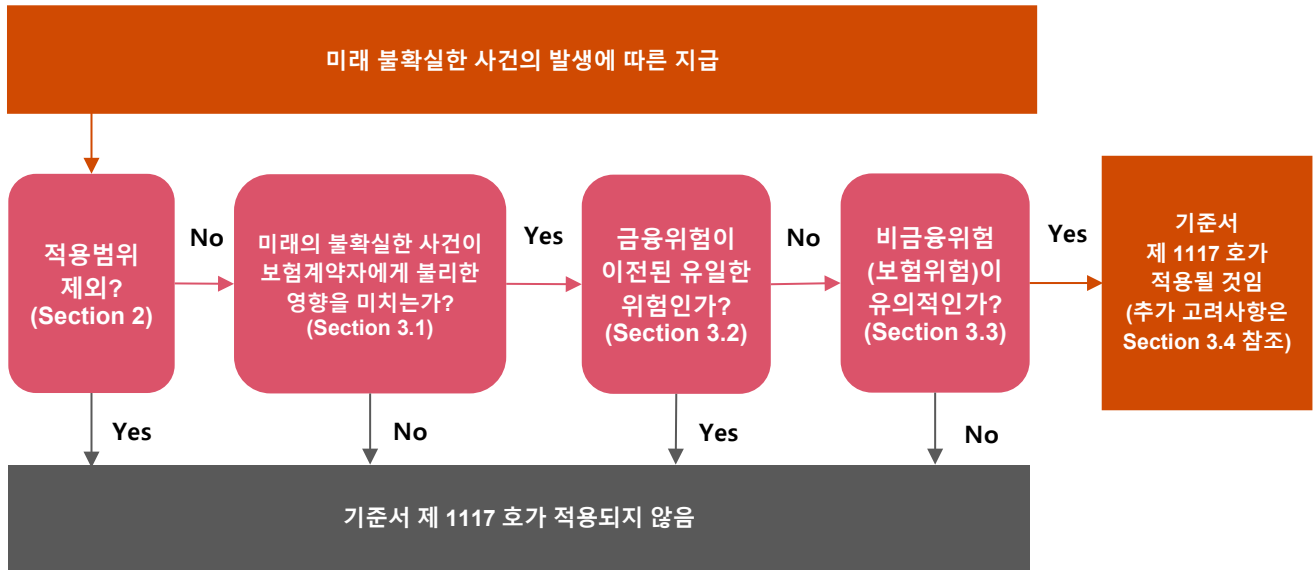
불확실성(또는 위험)은 보험계약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의 개시 시점에 다음 중 하나 이상은 불확실하다.

- 보험사건의 발생 가능성 (예: 차량수리보험의 경우 차량이 고장이 날 지 여부)

- 보험사건의 발생 시기 (예: 연금의 경우 개인의 기대수명보다 오래 살 지 여부)
- 보험사건이 발생할 경우 기업이 지급할 금액 (예: 건강보험의 경우 의료비용의 발생 규모)

기준서 제 1117 호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의 보유자가 아닌 발행자에게 적용된다. 건물을 소유하고 건물에 대한 보험을 구매한 기업은 보험계약의 보유자로 구매한 보험계약에는 기준서 제 1117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발행한 기초 보험계약에서 생기는 보험위험을 이전하기 위해 재보험계약을 보유하는 보험계약의 보유자의 경우에만 기준서 제 1117 호를 적용한다.

아래 순서도는 비보험회사들이 발행한 계약이 기준서 제 1117 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인지를 식별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들을 보여준다.



2. 기준서 제 1117 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계약

계약이 기준서 제 1117 호에서 정의한 '보험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계약이 적용범위 제외에 해당한다면 기준서 제 1117 호에 따라 회계처리되지 않는다. 이러한 적용범위 제외는 비보험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다양한 계약을 포함하므로 '보험계약'을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부 적용범위 제외는 필수 사항이며 특정 종류의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 이 내용은 2.1 에서 다룬다. 다른 적용범위 제외는 선택 사항이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2.2 부터 2.5 에서 설명한다. 일부 적용범위 제외는 연결 수준에서는 적용될 수 있지만 발행자의 개별재무제표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기준서 제 1117 호는 명백히 구분되는 재화나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보험계약자에게 이전하겠다는 약정은 분리하여 기준서 제 1115 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는데 이 내용은 아래의 2.6 에서 설명한다.

2.1 다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

다음의 계약은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에도 기준서 제 1117 호가 아닌 다른 기준서가 적용된다.

- 제조업자, 판매업자, 소매업자가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보증(기준서 제 1115 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참조)
- 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용자의 자산 및 부채(기준서 제 1019 호 '종업원급여'와 기준서 제 1102 호 '주식기준보상' 참조)와 확정퇴직급여제도에 따라 보고되는 퇴직급여채무(기준서 제 1026 호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참조)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나 변동리스로 등 비금융항목을 미래에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거나 비금융항목을 사용할 권리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상 권리나 의무(기준서 제 1115 호, 기준서 제 1038 호 '무형자산' 및

기준서 제 1116 호 '리스' 참조)

- 제조업자, 판매업자, 소매업자가 제공한 잔존가치 보장 및 리스에 내재된 리스이용자의 잔존가치 보장(기준서 제 1115 호 및 기준서 제 1116 호 참조)
- 사업결합으로 지급되거나 수취할 조건부 대가(기준서 제 1103 호 '사업결합' 참조)
- 기업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 다만, 출재보험계약은 제외.
- 신용이나 지급약정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으로서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개별 고객과 관련된 보험위험의 평가를 해당 고객과의 계약의 가격설정에 반영하지 않는 계약(기준서 제 1109 호 및 다른 해당 기준서 참조). 그러나 기준서 제 1109 호에 따라 그러한 계약에 내재된 보험보장요소를 분리해야 하는 경우(기준서 제 1109 호 문단 2.1⁽⁵⁾(e) 참조)에는 그 요소에 이 기준서 적용.

사례 - 보증계약의 적용범위 제외

가전제품 제조 및 판매 회사는 가전제품을 판매할 때 고객들에게 제조 결함으로 인한 수리에 대한 3 년 무상 보증을 제공한다. 또한, 고객은 회사의 종속기업이 제공하는 2 년 연장 보증을 고정된 가격에 추가로 구입할 수 있다.

질문 1: 이 두 개의 보증 상품 중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서 기준서 제 1117 호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보험계약이 있는가?

아니다. 연결실체 관점에서는 가전제품, 3 년 보증, 2 년 연장 보증은 동일한 보고기업에 의해 제공된다. 수행할 서비스의 횟수나 서비스의 특성 중 하나 또는 둘 모두가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계약에는 보험위험이 있을 것이다.

보증과 연장 보증 계약은 둘 다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고, 그 위험이 유의적이라면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할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유형의 보증은 모두 판매 시점에 이용 가능하므로 제조업자, 판매업자, 소매업자가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보증에 대한 적용범위 제외를 충족할 것이다.

질문 2: 연장 보증 계약이 나중에 제공되고 판매거래에는 고정수수료로 미래의 보증을 구매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위의 답변이 변경되는가?

그렇다. 연장 보증이 판매와 관련이 없고 이후 단계에서 제공되는 경우(즉, 기존 판매가 향후 고정수수료로 보증을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판매와 관련되지 않으므로 기준서 제 1117 호의 적용범위 제외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계약이 다음의 2.2 에서 설명하는 고정수수료 서비스계약의 조건을 충족할 수도 있다.

질문 3: 연장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속기업 수준에서는 답변이 변경되는가?

그렇다. 연장 보증을 제공하는 종속기업의 별도재무제표 기준에서는 수리 및 유지보수가 제조업자, 판매업자, 소매업자가 아닌 당사자에 의해 제공되므로 기준서 제 1117 호 문단 7(1)의 적용범위 제외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종속기업 수준에서는 다음 2.2 의 고정수수료 서비스 계약 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2 고정수수료 서비스 계약

기업은 고정수수료로 용역을 제공하는 일부 계약에 기준서 제 1115 호나 기준서 제 1117 호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한 계약에는 대상 설비의 고장 발생시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수리해야 하는 유지보수 계약이나 차량 고장 시의 긴급출동 또는 가까운 차고로 견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 등이 있다. 서비스의 수준이나 그에 따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가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런 계약들은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할 것이다.

기업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그러한 보험계약에 대해 기준서 제 1117 호 대신 기준서

제 1115 호를 적용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 기업은 고객과 계약 가격을 정할 때 개별 고객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지 않는다.
-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보다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상한다.
- 계약에 따라 이전되는 보험위험은 주로 서비스의 원가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발생하기보다는 고객의 서비스 사용에서 발생한다.

기업은 각 계약별로 회계처리기준을 선택할 수 있으나, 선택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사례 – 고정수수료 계약에 대한 선택적 적용범위 면제

고정수수료 부동산 유지보수계약이 기준서 제 1117 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인가?

기업 A 는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소유하고 있다. 해당 부동산의 유지 및 보수는 부동산 관리 회사인 기업 B 에 5 년간 외주를 맡겼으며 대가로 고정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수수료에는 부동산 관리에 대한 대가 및 수리 작업 원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계약조건에 따라 부동산을 합의된 표준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리 및 유지 관리는 계약 개시시점부터 기업 B 의 책임이다.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 B 는 기업 A 가 소유한 해당 부동산 포트폴리오와 관련하여 요구될 수 있는 위험 및 예상되는 수리를 평가하였다. 여기에는 정상적인 마모나 손상 및 특정 기타 상황(예: 수리 작업 과정에서 발견되는 부식 및 습기)이 포함되었다. 수수료는 계약 시점에 확정했다. 화재나 태풍 피해와 같은 외부 사건의 결과로 필요한 수리는 기업 A 가 별개의 보험회사와 맺은 보험계약에 의해 계속 보장된다.

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수행할 서비스의 횟수나 그러한 서비스의 성격이 미리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의적인 보험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상황에는 다음의 불확실성이 있다.

- 특정 수리가 필요할지 여부
- 특정 수리가 언제 필요할지
- 특정 수리의 비용이 얼마나 될지

특정 수리가 필요할지, 필요하다면 언제 필요할지 그리고 비용이 얼마나 될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사건이 존재한다. 기업 B 가 인수한 보험위험의 유의성은 기준서 제 1117 호에 따라 계약별로 평가한다. 기업 B 의 부동산 관리계약 전체적으로 볼 때는 중요한 손실의 발생가능성이 미미하다 하더라도 기업 A 와의 계약과 같은 어느 하나의 계약에서 유의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위험은 유의적일 수 있다.

보험위험이 유의적이라면 기준서 제 1117 호를 적용한다. 기업 B 가 고객인 기업 A 의 해당부동산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위험의 평가에 기초하여 계약의 가격을 정했기 때문에, 이 계약은 고정수수료 계약 적용범위 면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기준서 제 1117 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사례 – 긴급출동 계약

IASB 는 IFRS 17 을 개발하면서 특정 설비가 고장이 나면 서비스 제공자가 수리해 주기로 하는 긴급출동 프로그램(roadside assistance programmes)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계약은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a. 보조 및 수리가 필요할지 또는 언제 필요할지 불확실하다.
- b. 소유주는 사건의 발생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는다.
- c. 서비스 제공자는 보조 또는 수리가 필요할 때 소유주에게 보상을 제공한다.

그러나, 기준서 제 1117 호 문단 8 은 고객과 계약 가격을 정할 때 개별 고객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지 않는 등의 특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러한 발행 계약에 대해 기준서 제 1117 호 대신 제 1115 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가 첫 해에 고정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최초

계약에서 기준서 제 1117 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약을 갱신할 때 서비스 제공자가 개별 고객과 관련된 위험(예: 이전 회계기간에 요청한 지원금액)을 고려하고 개별 위험평가를 갱신가격에 반영하게 된다면 갱신된 계약에는 고정수수료 서비스 계약에 대한 면제를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최초 계약에 대해 기준서 제 1115 호를 적용하고 갱신 계약에 대해 기준서 제 1117 호를 적용하는 대신 처음부터 그러한 모든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그러한 계약에 기준서 제 1117 호를 적용할 때 비교적 단순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한다면 그 회계처리 결과가 기준서 제 1115 호를 적용한 것과 다소 유사할 수 있을 것이다.

2.3 사망 시 상황을 면제해 주는 대출계약

보험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계약에 따라 발생할 보험계약자의 의무를 결제해야 하는 금액으로 보험사건에 대한 보상이 한정되는 계약을 발행한 기업은, 다른 적용범위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그 계약에 기준서 제 1117 호나 기준서 제 1109 호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에는 사망 시 상황을 면제해 주는 대출계약이 있다.

기업은 보험계약의 각 포트폴리오에 어떤 기준서를 적용할지 선택하되, 각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 선택은 취소할 수 없다.

사망 시 상황을 면제해 주는 보장이 있는 대출에 기준서 제 1109 호를 적용하는 것이 기준서 제 1117 호보다 더 쉬울 수 있다.

사망 시 상황을 면제해 주는 대출계약에 대한 기준서의 선택 적용은 역모기지(아래 3.2 참조)와 같은 계약에 적용된다. 기준서 제 1104 호에서 많은 기업이 기준서 제 1039 호의 원칙(기준서 제 1104 호에서 허용하는)을 적용하여 이러한 담보대출을 회계처리 했고 따라서 기준서 제 1117 호를 적용할 때에도 기준서 제 1109 호를 선택하는 것이 실무상 어려움이 덜할 것이다.

2.4 금융보증 및 이행보증계약

a. 금융보증계약

금융보증은 차입 약정에 관한 금융보증, 일부 신용장, 신용디폴트계약 등 다양한 법적 형식을 가진다. 비보험회사는 모든 차입이나 구매 약정의 조건을 검토하여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을 식별해야 할 것이다.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계약발행자가 특정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으로 정의된다. 한편, 금융보증계약의 발행자가 해당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사전에 명백히 하고 보험계약에 적용가능한 회계처리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금융보증계약은 기준서 제 1117 호가 아니라 기준서 제 1109 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 기준서 제 1104 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던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기준서 제 1117 호가 시행되면 발행자는 그러한 계약에 기준서 제 1117 호나 기준서 제 1109 호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한 선택은 각 계약별로 할 수 있으며, 선택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기준서 제 1117 호는 금융보증계약 보유자의 회계처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비보험회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발행된 금융보증에 기준서 제 1109 호를 적용하던 기업은 기준서 제 1117 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준서 제 1109 호에 따르면 기업은 계약의 당사자가 될 때 금융보증을 공정가치로 최초인식해야 한다. 후속측정 또한 기준서 제 1109 호에 따라 인식한 금융부채를 매 보고기간에 재평가하여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손실충당금과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준서 제 1115 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한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한 간편법은 금융보증계약에 적용할 수 없다. 복수의 시나리오와 미래 전망 정보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기대신용손실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은 금융보증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제공되는 경우

복잡할 수 있다.

금융보증계약에 기준서 제 1104 호를 적용하던 기업들의 경우 금융보증이 실행될 때까지 재무상태표에 금융보증을 인식하지 않았다(즉, 기준서 제 1037 호에서 요구하는 측정치를 사용하여 기준서 제 1104 호 부채의 적정성을 평가).

기준서 제 1104 호에서 기준서 제 1117 호로 전환하여 기준서 제 1117 호의 요구사항을 최초로 적용할 때 해당 기업들은 기준서 제 1117 호나 제 1109 호 중 하나를 그러한 계약에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기준서 제 1117 호 회계처리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많은 비보험회사들이 기준서 제 1109 호의 적용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금융보증계약에 기준서 제 1109 호를 적용하지 않던 기업들의 경우, 3 단계 기대신용손실 모형에 따라 기준서 제 1109 호의 부채를 계산하는데 상당한 작업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어느 기준서를 적용하던 금융보증계약(그룹 내 기업간 보증 포함)의 발행자들에게 소급적용이 필요한 유의적인 회계정책 변경일 수 있다.

사례- 종속기업의 대주은행에 지배기업이 제공한 금융보증계약

선박회사인 기업 X는 새로운 선박을 취득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외부 자금이 필요하다. 기업 X는 다음 두 개의 100% 소유 종속기업을 설립하였다.

- 종속기업 A, 선박의 '취득자'이면서 후속적으로 이를 사용할 회사
- 종속기업 B, 연결실체의 자금조달 회사 'Finco'

종속기업 B는 Y 은행에서 차입하여 조달한 자금을 종속기업 A에게 대여하여 선박을 취득하게 할 것이다. 종속기업 A는 종속기업 B에게 원금과 대출 이자를 상환하기에 충분한 수익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종속기업 B는 A로부터 수령한 이자수익을 Y 은행에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데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Y 은행은 기업 X가 관련 이자 지급의 90 일 이상 연체 등 각종 '부도사건'이 발생하면 개입해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종속기업 A 나 B에 대한 보증을 요구한다.

기업 X가 Y 은행에게 제공하는 보증은 금융보증계약이다. 만약 발행자가 기준에 해당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사전에 명백히 하고 기준서 제 1104 호에 따라 회계처리했다면, 기준서 제 1117 호가 적용될 때 별도재무제표에서 기업 X는 회계정책 선택을 다시 검토하고 기준서 제 1117 호와 기준서 제 1109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금융보증계약의 회계처리에 적용해야 한다.

한편, 연결 관점에서는 그러한 금융보증은 별도의 계약이 아니라 연결실체가 제 3 자에 대해 인식한 부채의 일부이다.

Y 은행은 금융보증계약의 보유자이며, 기준서 제 1117 호의 채택은 대출금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종속기업 B는 지배기업의 보증이 없었다면 지급해야 했던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부터 효익을 얻었을 수 있고, 종속기업 B의 재무제표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적절한 회계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준서 제 1109 호와 제 1117 호는 이러한 경우의 차입자 회계처리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종속기업은 보통 해당 차입금을 보증이 포함된 차입금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참고로, 만약 기업 X가 공식적인 보증을 Y 은행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 종속기업에게 비공식적 letter of comfort 만을 제공했다면 이는 금융보증계약이 아닐 것이다.

b. 이행보증계약

이행보증은 종종 주요 공공기반시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제공된다. 그러한 보증은 건설계약의 일부일 수도 있고 건설회사와 관련 있거나 없는 다른 당사자에 의해 발행되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보증은 건설회사의 고객에게 건설회사의 계약상, 상업적 또는 법적 의무의 이행을 보장한다. 이행보증계약이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고 불리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보상받게 될 고객으로부터 유의적인 보험위험이 이전되는 계약이라면

보험계약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기준서 제 1109 호와 제 1117 호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금융보증계약과는 다르게 이행보증계약에 대해서는 그러한 선택권이 없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이행보증계약의 발행자는 기준서 제 1117 호를 적용해야 한다.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위험을 인수하지 않았거나 인수한 보험위험이 유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대출약정의 정의를 충족할 것이기 때문에 기준서 제 1109 호를 적용하여 신청자에 대한 대출약정으로 이행보증을 회계처리한다.

사례 – 부동산 개발 이행보증계약

부동산 개발회사인 기업 X 는 특정 부동산 개발에 동의하고, 이를 위해 다음 두 개의 100% 소유 종속기업을 설립하였다.

- 종속기업 A, 부동산 개발회사
- 종속기업 B, 보증 제공 회사

종속기업 B 가 종속기업 A 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을 포함하여 해당 부동산 개발을 위해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계약에 따르면, 종속기업 A 가 불이행하는 경우(즉, 개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종속기업 B 는 다른 개발자를 선정하여 관련 의무를 이행하거나(또는 이행하는 것과 함께) 고객에게 재정적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기업 X 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이행보증계약에 따른 지급은 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데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금액은 기준서 제 1115 호에 따라 일반적으로 변동대가로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종속기업 B 의 재무제표에서 이행보증계약은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고 기준서 제 1117 호에 따라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구상권이 있는 이행보증계약의 사례는 [FAQ \(IFRS 17\) 구상권이 있는 이행보증의 보험계약 여부 .docx \(sharepoint.com\)](#) 참조.

2.5 신용카드 계약 또는 다른 지급약정 계약

일부 신용카드 계약(또는 신용이나 지급약정을 제공하는 유사한 계약)은 보험위험의 정의를 충족하는 상황에서 카드 보유자에 대한 지급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한다. 그러한 사례로는 카드 보유자가 결함이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카드로 구매하거나 카드로 구매한 재화나 서비스가 인도되지 않은 경우 또는 사기로 정당하지 않은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등이 있다. 한편, 개별 고객과 관련된 보험위험의 평가를 해당 고객과의 계약의 가격설정에 반영하지 않는 계약에는 기준서 제 1117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례 – 보험보장이 있는 신용카드

은행은 고객에게 신용카드(또는 기타 유사한 계약)를 발급한다. 신용카드 계약상 고객은 결함이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카드로 구매하거나 카드로 구매한 재화나 서비스가 인도되지 않은 경우 또는 사기 등으로 인한 카드 오용(misuse)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한다. 또한 고객은 구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구매가격을 환불받는 것보다 더 큰 금액일 수도 있다)으로부터도 보호된다. 은행의 카드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는 제공된 보호와 관련된 카드 보유자의 개별 위험 평가를 반영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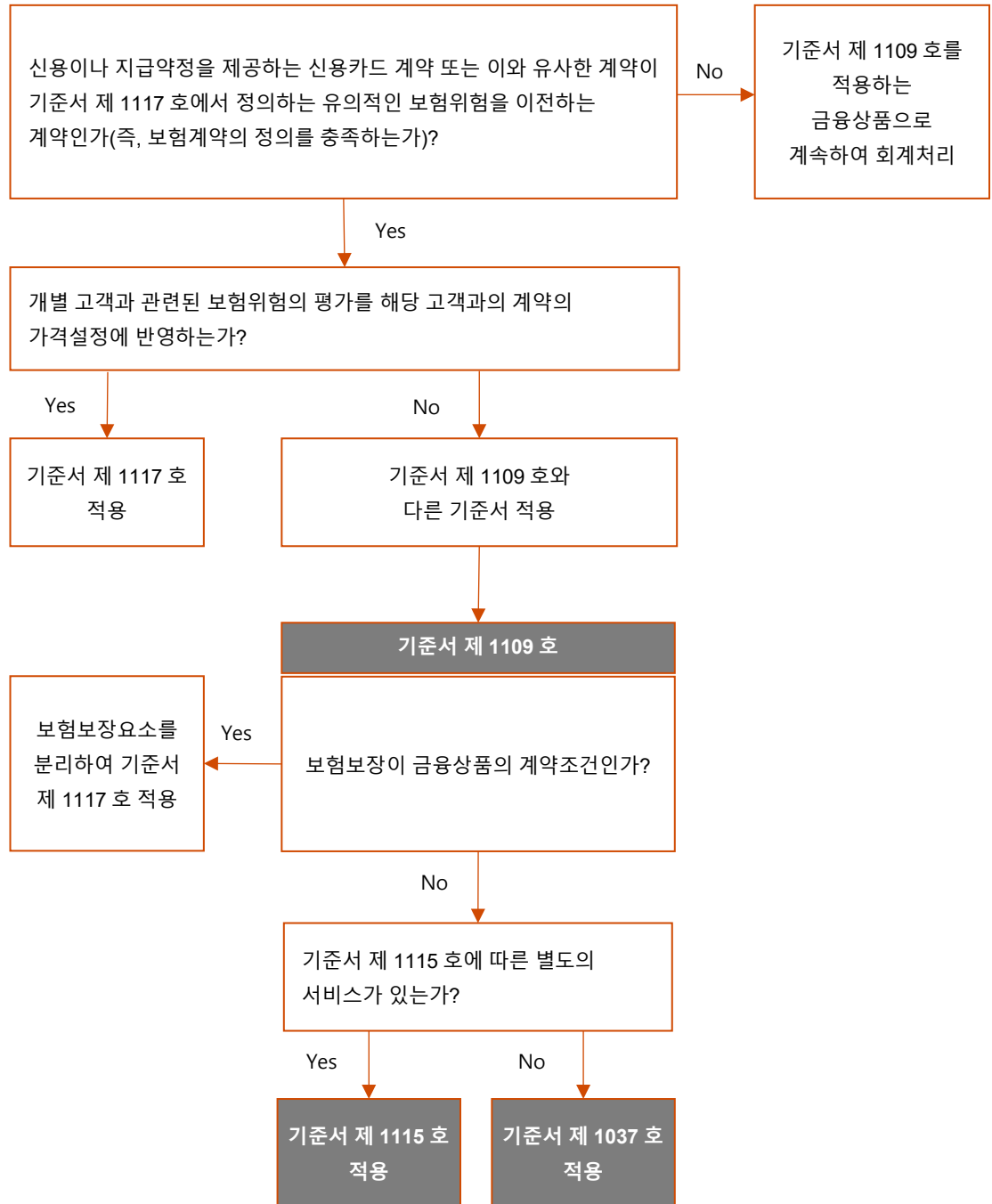
신용이나 지급약정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기준서 제 1109 호의 적용범위 제외 규정이 개정되었고 2023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은행은 카드 보유자와의 계약에 기준서 제 1117 호를 적용하는가?

은행은 그 계약이 기준서 제 1117 호에서 정의하는 보험계약인지 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재화나 서비스의 결함이나 재화나 서비스의 미인도 및 잠재적인 사기는 카드 보유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하는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이다. 또한, 고객은 관련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단순히 구매 가격을 환불하는 것보다 더 높을 수

있음)으로부터도 보호된다. 따라서, 동 계약으로 은행에 이전된 위험은 보험위험이다. 기준서 제 1117 호에서 정의한 유의적인 보험위험이 있다면, 해당 계약은 기준서 제 1117 호의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한다.

다음 순서도는 은행이 신용이나 지급약정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의 회계처리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질문을 보여준다.



아래에서 위 질문들을 하나씩 살펴본다.

은행이 개별 고객과 관련된 보험위험의 평가를 해당 고객과의 계약의 가격설정에 반영하는가?

은행은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신용카드 계약과 관련된 기준서 제 1117 호의 적용범위 제외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사례의 은행은 카드 보유자의 개별 위험 평가를 반영하는 수수료를 카드 보유자에게

부과하지 않으므로 적용범위 제외 기준을 충족한다.

보험보장이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인가?

기준서 제 1109 호를 적용할 때, 은행은 보험보장이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인지를 여부 결정해야 한다. 계약이 기준서 제 1109 호의 적용범위이므로 '계약조건'의 해석은 기준서 제 1109 호와 일관되어야 한다. 특히 그 해석은 기준서 제 1109 호 문단 B4.1.13 을 해석하는 것과 일치해야 한다. 해당 문단은 감독당국의 힘에 따라서만 생기는 지급은 그러한 힘과 그에 따른 지급이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인지를 분석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해당 문단은 감독당국이 발행자가 심각한 재무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는 등의 경우, 특정 금융상품의 액면금액을 상각하거나 해당 금융상품을 확정수량의 발행자의 보통주로 전환시키는 힘을 보유하는 조건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 E 를 그 현금흐름이 계약상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었다고 분석한다.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이 계약상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었는지를 평가할 때 법률의 존재를 인정하기만 하는 조항(즉, 그러한 조항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추가적인 권리나 의무를 창출하지 않는다.)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 그 결론을 보험보장에 적용하면, 단지 보험보장 법률의 존재를 인정하기만 하는 경우의 보험보장 조항은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금융상품 계약조건인 일부가 아니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 보험보장을 규정하는 법률 자체에 보험보장을 가져오는 사건과 그로 인한 영향을 포함하여 모든 주요 조건이 특정된다.
- 법률이 변경될 경우 상품의 보험보장 조건이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되도록 계약조건이 설정되었다.

경우에 따라 계약조건이 그러한 조항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추가적인 권리나 의무를 창출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만약 은행이 특정 보험보장을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이라고 결론 내린다면, 기준서 제 1109 호는 그 보험보장요소를 계약에서 분리하여 기준서 제 1117 호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보장이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상품은 기준서 제 1109 호의 적용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은행은 아래에서 논의하는 다른 적용 가능한 기준서를 고려해야 한다.

기준서 제 1115 호에 따른 별도의 서비스가 있는가?

기준서 제 1117 호 결론도출근거 BC94 에서 IASB 는 법이나 감독규정에서 요구하는 다른 서비스요소 또는 보험요소와 같은 계약 내 다른 요소들에는 기준서 제 1115 호나 기준서 제 1037 호와 같은 다른 기준서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하였다.

계약상 약속은 명시적인 약속일 수도 있고, 기업의 사업 관행, 공개한 경영방침, 특정 성명(서)를 통해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하도록 하는 암묵적 약속일 수 있다. 보증은 계약서상 문서화될 수도 있고, 또는 기업의 사업 관행이나 법적 요구사항의 결과로 암묵적으로 제공될 수도 있다. 은행은 결함이 있는 재화나 서비스 및 재화나 서비스의 미인도와 사기에 대한 보험보장이 기준서 제 1115 호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별도의 수행의무인지를 평가해야 한다. 이 평가는 판단을 필요로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을 것이다.

- 결함이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 / 재화 또는 서비스 미인도에 대한 보험보장. 그 보험보장은 재화가 기대한 대로 일정 규격에 따라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만 확신을 제공하므로 별도의 수행의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보증은 일반적으로 판매 시 존재하던 결함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려고 제공되며 고객에게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사기에 대한 보험보장. 사기에 대한 보험보장 또한 확신을 제공하는 보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은행은 신용카드 보유자에 의해 적절하게 승인된 거래를 실행하고 대금은 정당한 판매인의 계좌로

이전될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사기 및 결함이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와 재화 또는 서비스의 미인도에 대한 보험보장 서비스는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의 일부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기준서 제 1037 호에 따라 회계처리될 것이다.

2.6 명백히 구분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분리

기준서 제 1117 호 문단 12는 보험계약자에게 명백히 구분되는 재화나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이전하겠다는 약정은 분리하여 기준서 제 1115 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한다. 추가 지침은 기준서 제 1117 호 문단 B33-B35에서 제공한다.

실무상 보험계약에 포함된 일부 재화나 서비스는 명백히 구분되고 따라서 분리하여 기준서 제 1115 호에 따라 회계처리될 것이다. 분리된 후 남아 있는 보험 요소에는 기준서 제 1117 호가 적용된다. 또한 명백히 구분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를 이전하는 약정을 포함하는 보험계약에는 기준서 제 1117 호가 적용될 것이다.

기준서 제 1117 호는 보험과 투자수익서비스 및 투자관련서비스에 대한 수익은 보장단위를 결정하여 인식할 것을 요구하지만, 명백히 구분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를 이전하는 약정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없다. 즉, 명백히 구분되지 않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포함하는 보험계약에 대해 기준서 제 1117 호는 보험계약마진(즉, 계약의 미실현이익)을 (명백히 구분되지 않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시기와 상관없이) 보험수익과 투자수익서비스 및 투자관련서비스 만을 고려한 관련된 보장단위를 사용하여 보험보장이 제공되는 기간에 걸쳐 인식되도록 하며, 이에 따라 회계적 또는 경제적 불일치가 발생할 수도 있다.

3. 보험계약을 식별하는 조건

아래의 3.1 부터 3.3 은 계약이 기준서 제 1117 호의 보험계약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식별하기 위해 1.개요의 순서도에 제시된 조건 중 주요한 세 가지를 살펴본다. 3.4 는 일반적으로 비보험회사들과는 관련성이 낮지만 결론을 내리려면 고려할 필요가 있는 다른 조건들을 요약하였다.

3.1 불확실한 사건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가?

불확실한 사건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계약은 기준서 제 1117 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의 손상을 보상하는 보험은 이를 충족할 텐데, 그런 계약이 없다면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손상에 의해 불리한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례 – 날씨 파생상품

기업은 장마 기간에 강우량이 평균 이하이면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상품이 보험계약인가?

아니다. 기후 변수만을 기준으로(일반적으로 날씨 파생상품으로 지칭) 또는 기타 지질 또는 기타 물리적 변수에 따라서만 지급을 요구하는 계약은 계약보유자가 내재된 위험에 대한 노출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유형의 계약을 이용하더라도 보험계약이 아니다. 급부금 지급의 전제조건으로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이전된 위험이 계약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않은 비금융변수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후 변수에 기초하는 보험계약이 아닌 계약의 사례로는 계약보유자가 기후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았더라도 기후 관련 기초변수에 따라 급부금이 지급되는 날씨 파생상품이 있다(예: 장마 기간 동안 강우량이 평균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는 계약).

이와는 달리, 급부금의 지급이 계약 당사자에게 특정되는 기후 변수의 변동에 기초하는 계약이라면(예: 장마 기간 동안 평균 이하 강우량의 결과로 계약보유자가 소유하고 경작하는 토지의 농작물 수확량 감소), 해당 계약은 기준서 제 1117 호의 적용범위일 수 있으며, 발행자는 다음 3.2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3.2 금융위험이 이전된 유일한 위험인가?

보험위험은 계약의 보유자로부터 계약발행자에게 이전되는 위험으로서 금융위험 이외의 위험이다.

기준서 제 1117 호는 금융위험을 '하나 이상의 특정변수의 미래 발생 가능한 변동으로 인한 위험. 기초변수는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 또는 신용지수나 그 밖의 변수를 말한다. 다만, 비금융변수의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정의한다. 계약당사자에게 특정되어 금융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금융변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계약당사자의 자산을 손상 또는 멸실시키는 화재의 발생 여부
- EBITDA
- 수익
- 금융기관의 규제 자본 측정치(예: 은행의 core tire 1 자본), 은행이 발행한 일부 채무상품에 포함된 non-viability 조항을 포함한다.

보험위험을 이전하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은 파생상품일 것이다.

위 금융위험의 정의는 기준서 제 1109 호의 파생상품의 정의 일부와 일관된다. 보험위험이 아니라 금융위험을 이전하기 때문에 기준서 제 1117 호의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해당 계약은 기준서 제 1109 호의 적용범위인 파생상품을 포함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파생상품 또한 아닐 수도 있지만(예:최초 계약 시 상당한 순투자가 있는 경우), 이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사례 – 내재된 EBITDA 보증

기업은 호텔 총수익의 일정 비율로 결정되는 변동수수료를 받고 20 년 동안 호텔 소유자에게 호텔 경영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해당 계약에는 호텔 소유자에게 이자, 세금, 감가상각 및 상각 전에 특정 수준의 소득('EBITDA')을 보장하는 보증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 EBITDA 가 예상 EBITDA 의 85% 미만인 경우, 서비스 제공자인 기업은 그 부족분을 보상하기 위해 호텔 소유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불가항력이나 재단장 등으로 인한 사업의 중단 이외에 적격한 EBITDA 미달성을 야기할 수 있는 사건과 관련된 제한은 없다. 따라서, 기업은 자체의 업무 수행 결과 외에도 해당 지역의 숙박시설 공급 과잉이나 기타 일반적인 시장 위험에 노출된다. 또한, 보증에 따라 호텔 소유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기업이 수익에 기초하여 소유주로부터 받게 될 변동수수료를 초과하여 소유주에 대한 순 지급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

내재된 EBITDA 보증은 EBITDA 가 예상보다 낮을 경우 호텔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주는데, 이는 호텔 소유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한 사건이다. 또한, 이는 호텔 소유자에게 특정되므로 금융위험이 아니다. 따라서, 이전된 위험은 보험위험이다.

해당 계약은 기준서 제 1117 호의 적용범위일 수 있으며, 발행자는 다음 3.3 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업은 또한 위의 2.6 에서 설명한 것처럼, 호텔 경영 서비스가 명백히 구분되는 서비스로 계약에서 분리하여 기준서 제 1115 호에 따라 회계처리되어야 하지 않는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전된 보험위험이 유의적이지 않다면 계약에 내재된 EBITDA 보증은 기준서 제 1115 호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변동대가일 수도 있다.

계약이 금융위험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준서 제 1117 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준서 제 1109 호 등 다른 기준서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할 것이다. 계약은 금융위험과 비금융위험을 모두 포함할 수 있고, 보험위험이 유의적이라면 그러한 계약도 보험계약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보험위험이 유의적인지 여부의 평가는 아래 3.3 참조.

사례 – 역모기지(Equity release mortgage)

기업은 equity release 모기지(일반적으로 '평생' 또는 '역' 모기지 라고도 함) 상품을 판매한다. 해당 계약은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매각대금보다 상환해야 할 모기지 원리금이 많은 경우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원리금은 상환이 면제되는 조건으로 발행된다. 해당 계약으로 차입자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다. 발생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고 누적된다. 원금과 누적 이자는 차입자가 사망하거나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할 때 지급기일이 도래한다. 그 후 주택이 매각되고, 그 매각대금은 모기지 잔액(누적 이자 포함)을 상환하는 데 사용된다. 기업은 지급받을 금액을 초과하는 매각대금에 대한 권리는 없지만 원금과 누적이자를 지급받기에 매각대금이 부족하다면 그 부족분을 부담한다.

계약이 보험위험을 이전하는가?

그렇다. 계약은 기업을 다른 위험들과 함께 차입자의 주택(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 위험에 노출시킨다. 주택의 공정가치가 일반적인 주택의 시장가치 변동(금융변수)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자산의 물리적 상태(비금융변수)도 반영하기 때문에 이는 금융위험만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계약은 금융위험뿐만 아니라 보험위험도 차입자로부터 기업에게로 이전한다.

이 계약은 최대 부족액이 모기지 잔액(즉, 차입자에 대한 혜택은 해당 조항이 없었다면 관련 의무를 결제하는데 필요한 금액으로 제한된다)이기 때문에 이 계약은 위의 2.3 에서 설명한 사망 시 상환을 면제해 주는 계약에 대한 선택적 적용범위 제외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기업이 기준서 제 1109 호의 적용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 계약은 기준서 제 1117 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기업은 아래의 3.3 의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3.3 비금융위험(보험위험)이 유의적인가?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시나리오(즉, 거래의 경제적 측면에서 식별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를 제외하고, 어떠한 하나의 시나리오에서라도 보험사건으로 인해 계약발행자가 유의적인 추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때에만 보험위험은 유의적이다. 추가 금액은 보험사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기준서 제 1104 호와는 달리 기준서 제 1117 호에서는 계약발행자에게 현재가치 기준으로 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상업적 실질이 있는 시나리오가 존재할 경우에만 보험계약은 유의적 보험위험을 이전한다고 규정한다. 유일한 예외가 재보험계약인데, 어떤 재보험계약이 계약발행자에게 유의적 손실 가능성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원수보험계약의 출재된 부분과 관련된 모든 보험위험을 재보험자에게 대부분 이전한다면 그 계약은 유의적 보험위험을 이전한 것으로 간주된다.

상업적 실질이 있는 시나리오의 발생가능성은 매우 낮을 수도 있다.

사례 –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은 시나리오

기업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허리케인에 의해 무너지는 경우 보험자가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계약을 가지고 있다. 허리케인이 건물을 무너뜨릴 가능성(이는 상업적 실질은 있는 시나리오임)은 낮지만, 해당 사건 발생시 보험사의 지급액은 상당할 것이다. 모든 다른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유사한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해당 계약은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포함한다.

기준서 제 1117 호 적용시 부채는 다른 회계기준 적용시보다 조기에 인식될 수 있다.

불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더라도 기준서 제 1117 호에 따르면 부채가 인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준서 제 1037 호를 적용하는 경우보다 부채를 빨리 인식하게 된다. 유사한 항목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기준서 제 1037 호에 따를 경우 기업은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에 부채를 인식할 것이다.

만약 보험사건이 계약보유자에게 유의적인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해당 시나리오는 유의적인 보험위험이 있는지 평가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

사례 – 보험계약자의 손실이 유의적이지 아니한가?

자산의 물리적 손상으로 계약보유자에게 1 원의 경미한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면, 계약 발행자가 100 만원을 계약보유자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계약이 있다. 이 계약에서 계약보유자는 1 원을 잃는 경미한 위험을 계약발행자에게 이전한다. 동시에 계약은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면 계약발행자가 999,999 원을 지급해야 하는 비보험위험을 발생시킨다. 이와 같이, 보험사건에 따라 계약보유자가 유의적인 손실을 보는 시나리오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발행자는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보유자로부터 인수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계약은 보험계약이 아니다.

3.4 추가적인 고려사항

지금까지 계약이 기준서 제 1117 호의 보험계약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식별하기 위해 비보험회사와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3 가지 조건을 살펴보았다. 3.4 는 일반적으로 비보험회사들과는 관련성이 낮지만 결론을 내리려면 고려할 필요가 있는 다른 조건들을 요약하였다.

조건	설명
기준서 제 1117 호에 따른 계약이 존재하는가?	계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 간에 집행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약정이다. 계약은 기업의 관례적인 사업 관행에 의해 서면이나 구두로 또는 암묵적으로 체결될 수 있다. 계약 조건에는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계약의 모든 조건이 포함되며, 계약의 암묵적 조건은 법이나 규정에 의해 부과된 조건을 포함한다. 기준서 제 1117 호를 적용할 때에는 계약으로 생기든 법 또는 규정으로 생기든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를 고려한다.
이전된 위험이 이미 존재하던 위험인가?	보험위험은 계약의 결과로 보험계약자로부터 기업에게 이전되는 이미 존재하는 위험이어야 한다. 계약에 따라 창출되는 새로운 위험은 보험위험이 아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고객에게 자동차를 리스로 제공하면서, 고객이 리스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제 3 자 차량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보상하는 선택적 보험보장도 제공한다. 이때 이전된 위험은 고객이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와 관련이 있고 보험계약에 의해 창출된 위험이 아니다. 따라서, 보험위험의 정의를 충족할 것이다.
다른 당사자로부터 이전된 위험인가?	보험위험이라면 다른 당사자(별도의 기업)로부터 위험을 인수해야 한다. 이 조건은 아래의 ‘그룹 내 보험회사를 통한 자가보험’ 사례에서 더 자세히 논의된다.
새로운 공시사항이 있는가?	기준서 제 1117 호는 기존 기준서 제 1104 호의 공시사항을 대부분 유지하지만 경과규정 공시를 포함하여 새로운 많은 공시사항을 추가하였다. 간소화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는 경우라 해도 기업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작업의 정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IFRS 17 공시사례(IFRS 17, Insurance Contracts: An illustration (sharepoint.com))의 부록 A 는 이러한 IFRS 17 공시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제공한다.
--	---

사례 – 그룹 내 보험회사를 통한 자가보험

종속기업인 보험회사(captive insurance subsidiary)를 통한 자가보험

비보험 연결실체가 종속기업인 계열보험회사를 통해 자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이 계약은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서 기준서 제 1117 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보험 연결실체가 보험 종속기업을 이용하여 그룹 내 모든 기업들이 사업 활동을 통해 노출되는 위험에 대해 보험보장을 제공받는 자가보험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보험 종속기업이 연결실체 내 기업들의 위험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보험 종속기업이 연결실체 외부의 보험자(또는 재보험자)와 공동위험에 대해 보험계약(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연결실체 내의 각 회사의 위험에 대해 별개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 더 저렴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보험 종속기업이 연결실체 내의 다른 구성원과의 계약에 따라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부담하고 개별재무제표나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 종속기업은 기준서 제 1117 호에 따라 이를 보험계약으로 처리한다. 해당 보험 종속기업과 연결실체 내 다른 구성원 간의 거래는 다른 모든 내부거래와 마찬가지로 연결 시 제거된다. 보험 종속기업이 제 3 자인 재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이 '재보험계약'은 연결 관점에서 보유하는 보험계약에 해당한다. 단, 연결실체는 보험계약을 발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이 재보험계약에 기준서 제 1117 호를 적용할 수 없다.

보험 종속기업으로부터 보장을 제공받는 연결실체 내의 기업들은 그들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채(예: 제품 리콜, 근로자 산재보상 및 기타 영업 배상책임)와 보험 종속기업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총액으로 인식해야 한다. 연결실체 내의 보험 종속기업의 존재 및/또는 제 3 자로부터 상업 보험 가입으로 인해 보상이 거의 확실한 경우 별도의 자산이 기록될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개별 기업의 관련 부채 자체가 감소되지는 않는다.

관계기업/공동기업인 보험회사(captive insurance associate/joint venture)를 통한 자가보험

일부 경우에 비보험 연결실체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보험회사와 공동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등 연결실체가 아닌 기업과 위험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자가보험을 운영하기도 한다. 해당 보험 관계기업/공동기업 자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연결실체는 해당 관계기업/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다음과 같이 기준서 제 1028 호의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 보험 관계/공동기업이 발행한 보험계약은 해당 관계/공동기업의 개별 재무제표에서 기준서 제 1117 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
- 해당 보험 관계/공동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연결실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투자지분에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공동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연결실체가 보험 관계/공동기업으로부터 구입한 보험계약은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서 기준서 제 1117 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선급보험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보장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한다.
-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표에서 보험 관계/공동기업과의 계약과 관련한 잔액(예: 선급보험자산, 미지급보험료, 보험금 회수)을 제거하지 않는다. 그러나 선급보험자산에 내재된 미실현이익 중 보험

관계/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과 관련된 금액은 제거되어야 한다. 보험 관계/공동기업이 보험수익을 인식하는 시점과 연결실체가 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시점에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미실현이익의 제거가 필요할 것이다.

기타 더 복잡한 captive 구조

특정 captive 구조는 더 복잡하며, 연결실체와 보험제공회사의 회계처리에 상당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감독규정으로 인해 연결실체가 관련 없는 상업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보장을 구입하고 그 상업 보험회사가 그룹의 captive 보험회사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도 있다.

4. 결론

기준서 제 1117 호의 적용범위에는 전통적인 보험회사가 아닌 기업이 발행한 일부 계약이 포함될 것이다. 적용범위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보험계약을 발행하는 기업은 그러한 계약의 회계처리에 기준서 제 1117 호를 적용해야 한다.

기준서 제 1104 호에서는 많은 기업이 계약의 보험요소를 '분리'하고 계약의 비보험요소에 다른 기준서의 측정원칙을 적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준서 제 1117 호는 일반적으로 전체 계약에 적용(제한적인 적용범위 면제와 보험계약에 포함된 명백히 구분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분리 규정은 있음)되고 상세한 측정 요구사항이 있다. 기준서 제 1117 호를 적용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이 보험계약을 식별하고, 해당 보험계약이 기준서 제 1117 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여,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회계처리의 영향을 적시에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PwC는 IASB의 제·개정 프로젝트를 요약하여 전달하는 'In brief'와 상세한 실무적용이슈를 다루는 'In depth'를 통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최근 제·개정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 자료는 이를 번역한 것으로서 각 사례는 결정 시점 당시 유효한 국제회계기준서를 기초로 작성되어 그 이후의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자료는 우리나라 감독기관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구체적인 회계처리 판단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2023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